

농 촌 진 흥 청

시 정 요 구

제 목 들녘별 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 영세율 미적용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내 용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들녘별 경영체 연계 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기계화 작업체계 기술보급을 위하여 “2014년 들녘별 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였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농산물 건조기”는 영세율에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4년 들녘별 경영체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사업비 100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15,730천원(부가가치세 1,430천원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초과지급한 부가가치세 1,430천원을 반환조치를 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은

초과지급한 사업비 1,430천원을 반환하시고,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